

제3182호  
2025. 4. 9.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유진영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5-38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
- 고 시  
제2025-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5  
제2025-31호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 8  
제2025-32호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 10
- 공 고  
제2025-356호 :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공고 ..... 12  
제2025-36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 14  
제2025-383호 : 다동근린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 ..... 1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8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완화로 침해된 골목상권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소비 진작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골목형상점가의 밀집기준(구역 내 점포 수) 완화 및 면적기준 단서 신설(안 제2조 1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 통시장과, 전화 : 02-3396-5043, 팩스 : 02-3396-8679, email : shiny0131@ 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30개”를 “15개”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p> <p>1. 면적 2천제곱미터당「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lt;단서 신설&gt;</p> <p>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p>	<p>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p> <p>1. ----- ----- 15개 ----- -----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p> <p>2. (현행과 같음)</p>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29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의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우리 구 주민과 통행하는 모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내용

- 금연구역 명칭: 서학당길(광화문빌딩 ~ 사랑의열매회관) 금연구역
- 소재지: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 지정 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거리 제44호
- 지정 장소 및 범위: 연장길이 105m  
(지정범위 내 보도 및 차도 일체를 포함한다)  
-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일부 도로 : 105m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2025년 4월 1일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5. 4. 1. ~ 2025. 5. 31.
- 과태료 부과일(개시일): 2025. 6.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고시방법: 구청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6.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금연사업 담당(☎02-3396-5673)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사항] 「서학당길(광화문빌딩 ~ 사랑의열매회관)」 금연구역 지정 후 주변 전체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1호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칭 번호	세계측지계		경도	위도	소재지	표지의 재질
	X(m)	Y(m)				

붙임 참조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25. 2. 25.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번호	세계측지계		경도	위도	소재지	표지의 재질
	X(m)	Y(m)				
지적도근점 11201	551743.25	201262.21	37° 33' 54.80539"	127° 00' 51.43232"	무학동 162-1	철재
지적도근점 11202	551753.64	201332.02	37° 33' 55.14205"	127° 00' 54.27673"	무학동 162-1	철재
지적도근점 11203	551545.84	201330.71	37° 33' 48.40211"	127° 00' 54.22208"	무학동 76	철재
지적도근점 11204	551517.89	201360.11	37° 33' 47.49523"	127° 00' 55.14986"	무학동 75	철재
지적도근점 11205	551594.00	201356.49	-	-	무학동 76	철재
지적도근점 11206	551630.34	201377.20	-	-	무학동 76	철재
지적도근점 11207	551648.50	201341.07	-	-	무학동 77	철재
지적도근점 11208	551632.24	201335.94	-	-	무학동 77	철재
지적도근점 11209	551616.66	201329.85	-	-	무학동 77	철재
지적도근점 11210	551622.07	201313.48	-	-	무학동 56	철재
지적도근점 11211	551624.14	201306.42	-	-	무학동 61	철재
지적도근점 11212	551629.59	201287.02	-	-	무학동 77	철재
지적도근점 11213	551642.92	201291.48	-	-	무학동 77	철재
지적도근점 11214	551664.06	201301.71	-	-	무학동 77	철재
지적도근점 11215	551677.80	201304.28	-	-	무학동 77	철재
지적도근점 11216	551714.37	201310.86	-	-	무학동 77	철재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32호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명칭 번호	세계측지계		경도	위도	소재지	표지의 재질
	X(m)	Y(m)				

### 붙임 참조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25. 3. 5.
측량성과 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명칭 번호	세계측지계		지역측지계		경도	위도	소재지	표지의 재질
	X(m)	Y(m)	X(m)	Y(m)				
지적도근점 11217	551092.21	198158.24	450786.32	198087.34			남창동 9-24	철재
지적도근점 11218	551074.14	198124.11	450768.24	198053.22			남창동 111-4	철재
지적도근점 11219	551099.37	198105.60	450793.46	198034.70			남창동 64-1	철재
지적도근점 11220	551112.52	198105.86	450806.61	198034.96			남창동 64-1	철재
지적도근점 11221	551134.10	198106.85	450828.19	198035.94			남창동 64-1	철재
지적도근점 11222	551172.69	198113.57	450866.79	198042.65			남창동 64-1	철재
지적도근점 11223	551206.54	198120.42	450900.64	198049.49			남창동 5-2	철재
지적도근점 11224	551223.54	198149.74	450917.65	198078.80			남창동 1-4	철재
지적도근점 11225	551228.45	198199.68	450922.57	198128.74			회현동1가 204-1	철재
지적도근점 11226	551233.60	198236.53	450927.72	198165.59			회현동1가 196-8	철재
지적도근점 11227	551199.15	198230.43	450893.27	198159.50			회현동1가 196-8	철재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56호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공 고 일 : 2025. 4. 3.
- 공고기간 : 2025. 4. 3. ~ 2025. 4. 18.
-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명예도로명 ‘유네스코길’ 사용 연장

명예도로명	시 점	종 점	부여 사유	연장사용기간
유네스코길	명동2가 83-5	저동1가 39-4	유네스코 가입 60주년을 기념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명예도로명 지정 요청에 따른 부여	2025. 4. 28. ~ 2030. 4. 27. (5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공간정보팀(☎3396-5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명예도로명 위치도 1부. 끝.

**붙임**

**명예도로명 위치도**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60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아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지정취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할 구역 내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중구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일자:** 2025. 8. 1.

**3. 금연 구역 지정 내용**

- 금연구역 명칭 및 소재지
  - 명칭: 명동N빌딩 ~ 하이드파크빌딩 주변 도로 금연구역
  - 소재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연장길이 203m  
(지정범위 내 보도 및 차도 일체를 포함한다)
  - ① 명동9가길 일부 구간: 70m
  - ② 명동7가길(남북) 일부 구간: 53m
  - ③ 명동7가길(동서) 일부 구간: 80m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 단속일(개시일): 2025. 10. 1.부터

- 홍보 및 안내기간: 지정일로부터 2개월간(단속일 전일인 2025. 9. 30.까지)

※ 안내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나.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행정예고 기간: 2025. 4. 4.~2025. 7. 31. (4개월간)

6. 의견제출 기간: 2025. 4. 4.~2025. 7. 31. (4개월간)

7.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구보 등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 1]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방문 시: 서울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보건지소과(무학동, 중구보건소)

- 전자우편: nosmo@junggu.seoul.kr

- 팩스번호: 02-3396-8899

제출하는 의견서에 “의견 제출자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미기재 시 접수하지 않함

라. 기타 문의: 중구보건소 보건지소과 건강마을팀 금연환경조성 사업 담당

☎02-3396-5673

[기타 참고 사항] 「명동N빌딩 ~ 하이드파크빌딩 주변 도로」 금연구역 지정 후 주변 전체 금연구역은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서

의견서			
행정예고명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주민(법인) 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지정위치 (행정예고 안)			
의견제출 내용			
※ 상기 기재 내용란 부족 시 별지 추가 작성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383호

다동근린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위한 열람공고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의거 다동근린공원 내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예정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안)

가. 계약대상(2필지)

연 번	지 번	면 적(㎡)	지 목
1	다동 51-5	149.8	대
2	다동 51-9	62.8	대

- 나. 계약목적: 도시계획시설 사업(다동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 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무상) ※ 상세내용 붙임문서 참조
- 라.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미만
- 마.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바. 열람장소: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52)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단,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제3조의 계약토지구역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라 정하고, 중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상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원녹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다동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5	대	149.8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5년 5월 00일부터 2028년 4월 00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 다동공원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장기미조성 기반시설을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공공에서 우선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연장에 적극 협력 한다.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다동공원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산책로 등
2. 다동공원 조성사업으로 식재한 수목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

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부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세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4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서울시 중구청장) (인)

###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서(안)(제1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을 “토지소유자”(단,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제3조의 계약토지구역의 소유권을 승계하는 자를 포함한다)라 정하고, 중구청장을 “공원관리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상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원녹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다동공원 조성사업」 관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녹지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붙임 도면과 같다.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비고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51-9	대	62.8	

제4조(계약토지의 부지사용료)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대상인 토지의 계약기간은 2025년 5월 00일부터 2028년 4월 00일까지로 한다.(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정비) “공원관리청”은 해당 부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다동공원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산책로 등
2. 다동공원 조성사업으로 식재한 수목 등

제7조(공원시설의 관리)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부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부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부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8조(토지사용의 제한) “토지소유자” 및 “공원관리청”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협의된 시설의 설치·정비 및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상호 협의 없이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9조(금지행위)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상호 협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재산세 비과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 2.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1조(해당 토지의 개방)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의 변경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

제13조(계약의 갱신 및 연장)

- 1. 계약의 갱신 여부는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2.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의 갱신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3. 제1호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전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제14조(계약위반 시 조치)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위반상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부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그 시설물을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계약내용의 해석과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4월 일

토지소유자 주소 :

성명 : (인)

공원관리청(서울시 중구청장) (인)